

한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시행방안 안내

□ 개요

- 「의료법」에 규정된 의료인 보수교육外에 별도의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(보수교육 ≠ 법정 의무교육)

※ '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'을 제외하고는 특정 업체·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받도록 하지 않으며, 교육 자료를 통한 자체(집합)·(무료)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 가능(외부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은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)

- 법정 의무교육 현황 : 교육별 내용은 세부내용 참고

연번	교육명	대상자	교육횟수	교육방법
1	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	사업자 또는 직원	1회	환경부장관 지정기관(협회 포함)
2	개인정보 보호 교육	개인정보 취급 근로자 전체	매년 1회 이상	집체, 온라인, 위탁
3	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	사업주 및 근로자	매년 1회 이상	자체, 사이버
4	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사업주 및 근로자	매년 1회	집합, 원격, 체험
5	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	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	매년 1시간 이상	인터넷
6	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	요양/종합병원 근무 의료인	매년 1시간 이상	집합, 인터넷
7	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	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	매년 1시간 이상	집합, 원격(인터넷)
8	긴급복지지원대상자신고 의무자 교육	의료기관 종사자	매년 1시간 이상	집합, 시청각, 인터넷
9	결핵예방 교육	미고시 (단, 일부 지자체는 이수 권고 ex : 서울시는 권고)		
10	퇴직연금 교육	퇴직연금제도 가입자(사업자)	매년 1회 이상	자체, 퇴직연금사업자 위탁
11	산업안전보건 교육	50인 미만 의원급은 해당 안됨		

한의학의료기관 법정교육의 세부내용

1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

- 관련법률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
- 교육대상 :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담당자
 - * 한의원의 경우 사업자(원장) 또는 사업자(원장)가 지정한 처리담당자(직원)가 이수. 다만, 처리담당자(직원)가 퇴사한 경우 다시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(개설원장)가 교육받는 것을 권고
- 교육횟수 :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(처리계획서 제출) 이후 1년 6개월 이내
 - * 한의원의 경우 개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(1번만 이수)
 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(처리계획서 제출)는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
 - * 재교육 사유 : 법 규정 위반,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(한의원 이전 등), 교육이수자 퇴사 등
- 교육방법 :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(우리협회 포함)만 가능
 - *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기관(한의사 참여 가능)은 '대한한의사협회, 환경보전협회' 2개 기관이 있음
 - 협회 교육 : www.akom.org - 보수교육(로그인) - 기타교육 - 법정교육(이수현황에서 이수증 출력)
 - 법정 교육수수료(22,500원). 단, 협회 교육시스템에서 회비완납 회원은 교육수수료 면제
- 교육이수 증빙 : 행정관청 확인 시 이수증으로 증빙
 - 교육기관(협회)에서는 교육결과(이수자 정보)를 환경부에 별도 보고
- 처벌내용(과태료) : (1차)50만원, (2차)70만원, (3차)100만원

2

개인정보 보호 교육

- 관련법률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
- 교육대상 :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의 이용,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 전체(한의원내 한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포함)
- 교육횟수 : 연간 지정 횟수나 수강시간 미규정(단, 매년 1회(1시간) 이상 권고)
- 교육방법 : 집체교육, 온라인교육, 강사초빙 위탁교육(의무 아님) 등
 - * 자체교육 : 협회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제공 교육 자료로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시(단, 참석자서명, 교육자료 등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필요)
 - * 온라인교육 :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<https://www.privacy.go.kr>) - 교육마당 - 온라인교육 - (무료)회원가입 후 수강 - 수료증 출력
- 교육이수 증빙 : 행정관청 확인 시 결과보고서 또는 수료증으로 증빙
- 처벌내용 :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
 - * 단,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관련 사고·사건 발생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·징수

3

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

- 관련법률 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,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교육대상 :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- 교육횟수 : 매년 1회 이상
- 교육방법 : 자체교육(직원연수, 조회, 회의 등), 사이버교육
 - 자체교육 : 협회(여성가족부) 제공 교육 자료로 사업주가 실시
 - 사이버교육 : <https://url.kr/mtdn7l> (고용노동부 교육 동영상)

- 단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경우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: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로 교육 할 수 있음
-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

○ 교육이수 증빙 : 교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년간 보관

○ 처벌내용(과태료) : 500만원 이하

-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
-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

4
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○ 관련법률 :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

○ 교육대상 : 사업주 및 근로자

○ 교육횟수 : 매년 1회, 1시간 이상

○ 교육방법 : 집합교육(직원연수,조회,회의), 원격교육(인터넷), 체험교육, 위탁교육 등

- 집합교육 : 협회(한국장애인고용공단) 제공 교육 자료로 사업주가 실시
- 단,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(상시 50명 미만)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·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할 수 있음

○ 교육이수 증빙 : 교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년간 보관

○ 처벌내용(과태료) : (1차)100만원, (2차)200만원, (3차)300만원
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

※ 의료인 관련 신고의무 및 교육 : 의료인으로서 신고의무가 별도로 있는 경우

5

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

※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○ 관련법률 :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

○ 교육대상 :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

○ 교육횟수 : 매년 1시간 이상

○ 교육방법 : 인터넷강의(협회 교육 포함), 집합·시청각 교육(다만, 의료인 1인 기관의 경우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터넷강의(이수증출력) 권장)

- 협회 교육 : www.akom.org - 보수교육(로그인) - 보수교육(좌) - 온라인강의 - 기타 -
[기관제출용]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(보건복지부/아동권리보장원) 수강 - 이수증 출력

- 인터넷교육(사이트 내에서 '아동학대'로 검색)

1.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: <https://sll.seoul.go.kr>

2. 경기도 지식캠퍼스 : <https://www.gseek.kr>

3. 중앙교육연수원 : <https://www.neti.go.kr>

4. 나라배움터 : <https://e-learning.nhi.go.kr>

○ 교육이수 증빙 : 행정관청 확인 시 이수증으로 증빙

○ 처벌내용(과태료)

- 교육 미실시 : (1차)150만원, (2차 이상)300만원

-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: (1차)300만원, (2차)500만원, (3차 이상)1,000만원

6

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

※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○ 관련법률 :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6

○ 교육대상 :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

○ 교육횟수 : 매년 1시간 이상

○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강의 등

- 집합교육 : 협회(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) 제공 자료로 신고의무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 실시
- 인터넷강의(사이트 내에서 '노인학대'로 검색)
 1.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: <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>
 2.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: <https://sll.seoul.go.kr>
 3. 경기도 지식캠퍼스 : <https://www.gseek.kr>

○ 교육이수 증빙 : 행정관청 확인 시 결과보고서로 증빙

○ 처벌내용(과태료)

- 교육 미실시 : 없음
- 미신고 : (1차)150만원, (2차)300만원, (3차 이상)500만원

7

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

※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의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○ 관련법률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의6

○ 교육대상 :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

○ 교육횟수 : 매년 1시간 이상

○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원격교육(인터넷강의 등)

- 집합교육 : 협회(장애인권익옹호기관) 제공 자료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실시
(다만, 의료인 1인 기관의 경우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터넷강의(이수증출력) 권장)
- 원격교육(인터넷) : <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>(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)

○ 처벌내용(과태료)

- 교육 미실시 : 없음
- 미신고 : 300만원 이하

8

긴급복지지원대상자신고 의무자 교육

※ 진료·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·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,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관련법률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

○ 교육대상 : 의료기관 종사자

○ 교육횟수 : 매년 1시간 이상

○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강의 등

- * 집합교육 : 협회(보건복지부) 제공 자료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실시
- 협회 교육(반영 준비 중) : www.akom.org - 보수교육(로그인) - 보수교육(좌) - 온라인강의
- 기타 -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(보건복지부) 수강 - 이수증 출력
- * 인터넷강의 : <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>(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)

○ 처벌내용 :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음

※ 기타 법정업무 교육

9 결핵예방 교육

- 관련법률 :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
 - 결핵예방법 시행규칙(제4조의2)에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관련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**현재까지 미고시**
 -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을 권고하므로 교육이수 여부 및 교육방법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요(예 : 서울시의 경우 연1회 이상 교육실시 권고)

10 퇴직연금 교육

- 관련법률 :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
- 교육대상 :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(가입자)
- 교육횟수 : 매년 1회 이상
- 교육방법
 -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: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 상시 게시(단,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발송 또는 직원연수·조화·회의·강연 등의 대면 전달 방식)
 - 확정급여(기여)형퇴직연금제도 교육 :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정기적 교육자료 발송, 직원연수·조화·회의·강연 등의 대면 교육, 온라인 교육, 상시 게시 등
 -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(기업)에게 교육 위탁 가능(교육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)
- 처벌내용(과태료) : 1천만원 이하

11 산업안전보건 교육

※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 안됨